(건축-013) ○○오피스텔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전도사고

공사명	온천 ○○ 오피스텔 신축공사			
사고일시	2019년 11월 30일(토) 08:50분경		기상상태	맑음
소재지	부산시 동래구	사고 종류	넘어짐(전도)	
구조물 손실	인근 상가 창호(1~3F, 유리) 및 벽체 파손, 화물차(1대) 및 도로 파손	인적피해	-	
장비 손실	크레인 턴테이블 파단	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	해당(〇)	, 해당없음()

가. 사고개요

1) 공사개요

○ 공사종류 : 업무시설

○ 공사규모 : 지하5층, 지상24층 오피스텔 1개동(616실)

○ 공사기간 : 2018.5~2020.9

2) 사고경위

○ 지상1층 상가에서 사용할 시스템서포트 자재 인양작업을 위해 무인타워크레인 운영하던 중 전도 (붐대 회전 중 상부 약 30m 구간 전도)

○ 맞은 편 상가건물 1층~3층 유리 및 외부창호, 벽체 파손 및 화물차 1대, 도로 파손

3) 사고원인

- 자재 인양을 위해 무인타워크레인을 운영하던 중 와이어 파단에 의한 반동으로 충격이 가해져 턴테이블의 볼트파손 및 지브(JIB)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
- 추락한 지브(JIB)에 의해 상가건물 외벽 및 유리창이 파손되었고, 이어 턴테이블이 추락하며 트럭 및 도로 파손 등 2차사고 발생
- 와이어 로프 파단 및 후크에 슬링벨트가 체결된 것으로 보아 실제 양중작업이 진행되었으며, 사용된 로프의 노후 또는 정격 하중을 상회하는 중량물 인양에 따른 파단사고로 추정됨

나. 재발방지대책

- 사업주는 양중기(승강기는 제외)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, 운전속도,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.
- 사업주는 양중기(揚重機)를 사용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해 신호하도록 해야 하며,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.
-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, 권과방지장치(捲過防止裝置),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, 그 밖의 방호장치[(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(final limit switch), 속도조절기, 출입문 인터 록(inter lock) 등을 말한다]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.

사고 사진 사고현장 전경





사고 사진 주변 피해현황(상가건물 1~3층(외벽면, 유리차 파손) 및 트럭 파손)

